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 벨류웨이4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사유 : ① 채권 모투자신탁 삭제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채권])
 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효력발생일 : 2025. 7. 25.
- 변경 내용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5. 5. 30. 기준</u>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5. 5. 30. 기준</u>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채권 모투자신탁 삭제	<신 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연혁] - <u>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 신탁[채권]</u>	<u>2025.07.25 :</u> - <u>채권 모투자신탁 삭제(트 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 [채권])</u>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연혁] <u><삭 제></u>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채권 모투자신탁 삭제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 <u>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 신탁[채권]</u>	<u>2025. 6. 30. 기준</u>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u><삭 제></u>
5.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5. 6. 30. 기준</u>

<p>5. 운용전문인력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p>	<p>채권 모투자신탁 삭제</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u>트러스트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u></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삭 제></p>
<p>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라. 모자형 구조</p>	<p>채권 모투자신탁 삭제</p>	<p>- <u>트러스트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u></p>	<p><삭 제></p>
<p>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가. 투자 대상</p>	<p>채권 모투자신탁 삭제</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u>트러스트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u></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삭 제></p>
<p>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나. 투자제한</p>	<p>채권 모투자신탁 삭제</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u>(2)트러스트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u></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삭 제></p>
<p>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p>	<p>채권 모투자신탁 삭제에 따른 문구 삭제</p>	<p>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80%이하를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40%이하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p>	<p>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80%이하를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40%이하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p>

		<p>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p> <p><u>채권 모펀드에 투자는 운용 규모 및 시장 상황에 따라</u> <u>듀레이션 1~2년 수준인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u> <u>신탁[채권]과</u> <u>듀레이션</u> <u>3~4.5년 수준인 트러스톤</u> <u>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u> <u>권]에 채권모투자신탁의 투</u> <u>자 비중을 조절합니다. 또</u> <u>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u> <u>에 따른 손익에 따라 이익</u> <u>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u></p> <p>□ 채권 모투자신탁의 투자 전략</p> <p>(1) 듀레이션 전략</p> <p>* 중기채권 모펀드 : 1~2년 수준 / <u>중장기 모펀드 : 3~4.5년 수준</u> / <u>트러스톤 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u></p> <p>2) 위험관리 전략</p> <p>시장위험: <u>시장상황에 따른</u> <u>듀레이션 조정으로 시장 위</u> <u>험을 최소화</u></p> <p>신용위험: <u>국공채, 통안채,</u> <u>신용등급 AAA 은행채 등에</u> <u>주로 투자함으로써 신용위</u> <u>험 최소화, 정량적 분석과</u> <u>정성적 분석을 종합적으로</u> <u>고려한 크레딧 유니버스 구</u></p>	<p>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p> <p>□ 채권 모투자신탁의 투자 전략</p> <p>(1) 듀레이션 전략</p> <p>* 중기채권 모펀드 : 1~2년 수준 / <u>중장기 모펀드 : 3~4.5년 수준</u> / <u>〈삭 제〉</u></p> <p>2) 위험관리 전략</p> <p>시장위험: <u>국내외 펀더멘탈,</u> <u>통화/재정정책, 수급 등 리</u> <u>서치를 기반으로 듀레이션</u> <u>조정하여 시장위험 관리</u></p> <p>신용위험: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크레딧 유니버스 구성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위험 관리</p>
--	--	--	---

		성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위험 관리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5. 5. 30. 기준</u>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신 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u>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u> <u>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u>

			<p>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p> <p>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p>
--	--	--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5. 6. 30. 기준</u>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최근 기준으로 기재	<u>제 26 기(2023.12.31)</u> <u>제 25 기(2022.12.31)</u>	<u>제 27 기(2024.12.31)</u> <u>제 26 기(2023.12.31)</u>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5. 6. 30. 기준</u>